

대학원 대회의실 운영 지침

2023.06.05. 제정

주무부서: 대학원 교육지원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BK21 대학원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대학원 대회의실의 관리, 운영 및 공간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대회의실 : 대회의실이란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BK21과 관련된 회의 및 학술행사를 주 기능으로 하는 교육기본시설을 말한다.
2. 관리부서 : 관리부서는 대회의실을 관리 및 운영하는 부서이다
3. 지원부서 : 지원부서는 대회의실의 사용을 지원하는 부서이다

제3조(대상) 이 지침에서의 대회의실은 대학원(302관) 5층 503호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대회의실의 관리부서는 대학원 교육지원팀으로 한다.

② 대회의실의 관리부서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회의실의 공간 관리 및 운영
2. 대회의실의 사용신청 검토
3. 대회의실의 사용허가 승인

제5조(지원) ① 대회의실 지원부서는 대학원 연구기획팀으로 한다.

② 지원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BK21 대학원혁신사업 및 참여사업단(팀)의 회의실 사용 지원
2. 대회의실에 설치된 첨단 기자재의 유지보수 계약 지원
3. 대회의실에 설치된 첨단 기자재의 사용법 안내 및 대응

제6조(공간배정 우선순위) 대회의실 공간배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대학본부(법인 포함)의 행사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관리부서 및 지원부서에서 주관하는 회의 및 학술행사
2. 4단계 BK21 관련 학술행사
3. 교내행정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학과의 학술행사
4. 그 외 대여는 관리부서에 사용신청을 한 후 관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대여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대여가 불가하며 대여가 승인되었더라도 관리부서가 취소할 수 있다.
 - 특정 단위/부서에서 주/월 단위의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수업이나 행사
 - 관리부서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사
 - 대여 신청 또는 승인된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 50명 미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관리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공간배정 절차) 대회의실의 사용신청 및 승인은 다음의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대회의실 배정을 위해 관리부서는 ‘대회의실 사용 협조요청’의 제목으로 사전 조사를 매 학기 시작일 4주 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2. 관리부서는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 학기 시작일 2주 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을 확정하여야 한다.
3. 관리부서는 제6조에 따라 대회의실의 공간을 배정한다.
4. 사전 수요 조사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하는 경우는 시설사용현황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고 관리부서가 판단될 경우 제6조에 의거하여 승인 후 배정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대회의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시설 및 기자재를 이용할 때에는 사전 교육을 통해 사용방법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모든 기자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반출할 수 없다.
3. 시설 및 기자재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 해당 시설 및 기자재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4. 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대회의실의 구조, 개조 등을 임의로 할 수 없다.

제9조(비용납부) 외부행사를 목적으로 대회의실을 대여하는 경우 사전에 총무팀을 통해 대여비용에 대한 결정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하며 지정된 날까지 허가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여를 취소한다.

제10조(대여금지)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1.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타 사용자의 행사를 위하여 배정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11조(기타) ① 대회의실 사용 협조요청 공문 발송 전에 발생하는 사용 건에 대해서는 교내 시설물 사용 규정을 따른다.

② 본 지침에 정하지 않는 시설물 사용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본교「교내 시설물 사용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